

• 지문의 일부만 복원된 경우 임의로 지문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였으므로 실제 시험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음.

1 현대행정국가의 기능적·질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조직의 동태화
- ② 행정의 분석 및 평가기능 강화
- ③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 ④ 행정기구의 확대 및 공무원 수 증가

해설

② (×) 제시된 '현대행정국가'는 20C초 큰 정부 상황으로서 양적 특징과 질적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행정기구 확대(증가) 및 공무원 수 증가는 현대행정국가의 양적 특징이다.

• 현대행정국가의 양적 특징 : 행정기능 증가로 업무량 증가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산·조직 증가(공무원 수 증가, 재정규모 팽창, 행정기구·조직 증가), 공공부문 조직 중 전문성을 갖춘 조직인 공기업·준정부조직·행정위원회·막료(참모)기관 증가

■ 현대행정국가의 특징

양적 특징	질적·기능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능 확대와 업무량 증가</li> <li>• 공무원 수 증가</li> <li>• 재정(예산)규모 팽창, 국고보조금 증대</li> <li>• 행정조직, 행정기구 증가</li> <li>• 공기업·준정부조직·행정위원회·막료(참모)기관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복잡화. 행정의 광역화·국제화</li> <li>• 정책결정·기획 중시, 관리과학(OR)·체제분석(SA) 발달</li> <li>• 전문직업관료의 증가</li> <li>• 행정조직의 동태화(탈관료제·탈계층제)</li> <li>• 예산의 관리·계획지향성</li> <li>• 신중양집권화, 광역행정</li> <li>• 행정의 재량권 증대(준입법·준사법 기능)</li> <li>• 행정에 컴퓨터 활용, 행정조사·통계 중시</li> <li>• 행정의 광역화·국제화</li> <li>• 인사행정의 적극화</li> <li>• 행정책임·행정통제의 중시(내부통제 중시)</li> <li>• 행정의 분석·평가 및 환류 중시</li> </ul>

답 ④

2 시장실패의 원인과 그 대응방식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는 정부가 조세를 재원으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여 해결할 수 있다.
- ②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통한 직접공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③ 자연자원의 과다사용에 따른 고갈 등 공유지의 비극문제는 소유권의 설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 ④ X-비효율성이 발생할 경우 민영화나 규제완화로 해결할 수 있다.

해설

④ (×) X-비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정부실패 원인이며, 민영화나 규제완화도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방식이다.

■ 시장실패 원인별 대응방식

구 분	공적 공급(조직)	공적 유도(유인, 보조금)	정부규제(권위)
불완전경쟁(독과점)			○(독과점규제, 경쟁 촉진)
자연독점(요금제)	○(공기업 설립을 통한 공급)		○(공기업에 대한 가격통제)
정보의 비대칭성		○(제품정보 제공시 유인 제공)	○(제품정보 공개 의무화)
외부효과의 발생		○(외부경제)	○(외부비경제)
공공재의 존재	○(공급비용은 조세수입으로 충당)		

■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구 분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사적 목표 설정(행정조직의 내부성)	○(관료이익 추구 제거)		
X-비효율, 비용체증(비용≠수익)	○(민간기업은 효율성 확보)	○(비효율적 보조금 삭감)	○(규제에 따른 비용 감소)
파생적 외부효과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규제로 인한 부작용 방지)
권력의 편재	○(독점적 권력에 따른 특혜 방지)		○(규제를 통한 특혜제공 방지)

답 ④

3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한 객관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의 계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이뤄졌다.
- ② 현실의 사회개혁과 관련되고, 시기적절한 연구를 위해 가치개입(value-laden)을 강조했다.
- ③ 사회현상을 자연현상과 동일시하고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적용하며,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를 강조했다.
- ④ 인간 행태의 규칙성·상관성·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설**

② (×) 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과학적 방법과 경험주의적 방법으로 행정현상을 사실명제와 가치명제로 구분하고, 행정학은 경험적으로 관찰 및 검증가능한 객관적 사실문제만을 연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면서, 가치중립·가치배제를 강조했다. 현실의 사회개혁과 관련되고, 시기적절한 연구를 위해 가치개입(value-laden)을 강조한 이론은 탈행태주의나 신행정론이다.

답 ②

**4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격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 ②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적용하여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자 한다.
- ③ 권한 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관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 ④ 시장규제는 완화하지만, 성과중심관리를 위해 내부규제를 강화한다.

**해설**

④ (×) 신공공관리론은 내부규제(관료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일선관리자들에게 권한(인사, 예산, 조직등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과중심의 행정을 중시한다.

답 ④

**5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연조직모형(신축적 정부모형)에서는 정부조직의 항구성을 타파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 ② 탈규제적 정부모형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참여정부모형에서는 조직 하층부 일선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때 공익이 확보된다고 가정한다.
- ④ 시장정부모형은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되느냐를 주된 공익의 판단기준으로 삼으며, 서비스 이용권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한다.

**해설**

② (×) 탈규제적 정부모형(탈내부규제모형)은 관료에 대한 내부규제를 철폐하고 관료의 재량권 확대를 통해 관료의 창의성·활동주의(activism)를 지향한다.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시장정부모형이다.

**■ 피터스(G. Peters)의 뉴거버넌스 모형**

구 분	전통적 정부	시장정부	참여정부	신축정부[유연한 정부]	탈규제[저통제]정부
문제진단	전근대적 권위	독점	계층제	영속성(경직성)	내부규제
구조의 개혁방안	계층제, 관료제	분권화	평면조직(계층제 완화)	가상조직	통제기관의 평가기관화
관리의 개혁방안	직업공무원, 내부규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간부문의 기법, 목표관리제	총체적 품질관리(TQM), 팀제, 권한위임, 서비스 현장제	가변적 인사관리(임시직, 계약직), 직업공무원제 탈피	관리상 재량권 확대 리더십 강조, 조직몰입
정책결정 개혁방안	정치·행정2원론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consultation) 협상(negotiation)	실험(experimentation) 시행착오	기업가적 정부 (entrepreneurial government)
공익기준	안정성(지속성) 평등	저비용(low cost) 산출·성과	참여(involve), 협의(consultation), 투명성	저비용(low cost) 조정(coordination)	창의성(creativity) 활동주의(activism)
조정	상의하달, 명령통일, 계층제	보이지 않는 손	하의상달	조직개편 새로운 조직유형 도입	관리자의 이익
오류 발견 및 수정	절차, 내부규제	소비·생산자의 선호 등에 의한 시장적 신호	시민참여기제 등의 정치적 신호	오류의 제도화(고착화) 방지	자기교육효과 등을 통한 보다 많은 오류 수용
공무원 제도	직업공무원제	시장기제로 대체 직업공무원단 해체	계층제 축소 직급별 공무원의 축소	임시고용제 활용 고위공무원단 활용	내부규제 철폐 관료들의 창의성 유도
책임성	대의정치 장관책임론	시장에 의존 창의성 보다 생산성 강조	소비자 불만에 의존 (정치적 신호와 유사)	명확한 제안 없음	사후통제에 의존

답 ②



**6 로위(Lowi)의 정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진세나 사회보장지출은 재분배정책에 해당된다.
- ② 정부의 조직개편과 기구설치는 구성정책에 해당된다.
- ③ 연구보조금 지급이나 주택자금대출은 배분정책에 해당된다.
- ④ 배분정책은 정책대상집단의 정치적 반발이 심하므로 정책집행에 강제력이 행사된다.

**해설**

④ (×) 규제정책의 특징이다. 규제정책은 규제대상집단(비용부담집단)의 정치적 반발이 심하고,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집행시 규제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공권력(강제력)을 행사한다. 배분정책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정책비용이 지불되고 정책의 혜택이 분배되므로, 비용부담집단의 정치적 반발이 거의 없으며 집행이 용이하다.

답 ④

**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타협을 위한 일선관료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② 일선관료는 정치적 합리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을 한다.
- ③ 일선관료는 원래의 집행계획이나 집행설계에 따라 의도한 대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확인·점검한다.
- ④ 일선관료는 정책집행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대면접촉하고 상호작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재량이 적지 않다.

**해설**

• 립스키는 정책집행론의 하향식 접근이 현장에서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일선관료의 역할을 경시했다고 비판하고 상향식 접근차원에서 일선관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선관료제론(Street-level Bureaucracy)을 제창하였다. 일선관료들이 일반적으로 처하게 되는 업무환경을 관찰하고 그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개발하는지 분석하였다. **일선관료는 정책집행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대면접촉하고 상호작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보유한 공무원이다.**

• 일선관료의 업무환경 : ㉠ 자원 부족(초과수요), ㉡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 모호하고 대립되는 (역할)기대, 이상과 현실적 요구 간 괴리(목표의 모호성·이율배반성, 업무성과의 객관적 평가기준 결여, 효과적인 통제의 부재)

• 일선관료의 대응 메커니즘 : ㉠ 단순화와 정형화[관례화], ㉡ 고객의 유형화·범주화·선별(creaming), ㉢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책임을 고객에게 전가

답 ④

**8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으로만 연결된 것은?**

- |               |              |
|---------------|--------------|
| ① 크리밍 효과 호손효과 | ② 호손효과, 성숙효과 |
| ③ 선정효과, 성숙효과  | ④ 역사효과, 성숙효과 |

**해설**

크리밍효과, 호손효과는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성숙(성장)·선정(선발)·역사(사건)효과는 내적타당성 저해요인.

■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표본의 무작위배정 및 대표성 관련요인	선발(선정)요인 상실(탈락)요인, 회귀인공요인(실험직전반응효과)	외재적 요인
	대상집단의 특성변화	성숙(성장)요인, 사건(역사)요인	내재적 요인
	관찰 및 측정 관련요인	측정수단(측정도구)요인, 측정(검사·조사·시험)요인	
	비교집단 간의 상호작용	오염·확산(누수[누출], 모방, 부자연스런 반응)	
	복합요인 - 단일 요인들의 상호작용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선정과 사건의 상호작용	외재적 요인 + 내재적 요인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①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② 표본의 대표성 미흡, ③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④ 크리밍 효과·위광 효과(creaming effect), ⑤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실험 전 측정의 반응효과 ; 사전조사문제), ⑥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 크리밍 효과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도 될 수 있음.

답 ①

**9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조직구조의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다.
- ②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과업은 더욱 분업화되고 단위부서가 더욱 차별화되면서 조직구조의 복잡성은 높아진다.
- ③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구조의 공식성은 낮아진다.
-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조직구조의 복잡성이 커질 것이다.



해설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

기본변수		상황변수		규모		기술		환경	
		대규모	소규모	일상적	비일상적	확실	불확실		
복잡성	분화의 정도(수직·수평적 분화, 공간적 분산)	↑	↓	↓	↑	↑	↓(이견 있음)		
공식성	표준화의 정도, 규칙·절차에의 의존도	↑	↓	↑	↓	↑	↓		
집권성	의사결정권·지휘감독권의 집중	↓	↑	↑	↓	↑	↓		

- ① (○) 일상적 기술일수록 복잡성이 낮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전문인력과 전문업무가 증가하여 분화가 촉진되므로 복잡성이 높다.
- ② (○) 조직규모가 커지면 직위와 직원 수가 증가하므로 수직적·수평적 분화가 촉진되므로 규모와 복잡성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
- ③ (×)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계층 수와 부하 수의 증가에 따른 통솔범위 확대에 직접감독 비용이 증가하므로 표준화된 규칙·절차 등 공식화를 통한 통제가 효율적이다(간접적 감독 증가). 따라서 규모와 공식성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조직규모가 클수록 공식성 증가).
- ④ (△) 환경의 불확실성과 조직구조의 복잡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역(逆)의 관계로 보는 견해	㉠ 번스(T. Burns)와 스토키(G. Stalker) ─ 환경이 안정적이고 확실 ⇨ 기계적 구조가 적합 - 조직구조의 복잡성·공식성·집권성 높음 ─ 환경이 불안정적이고 불확실 ⇨ 유기적 구조가 적합 - 조직구조의 복잡성·공식성·집권성 낮음 ㉡ 베니스(W. Bennis) : 환경의 불확실성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Adhocracy는 조직구조의 복잡성·공식성·집권성의 정도가 모두 낮다.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수평적으로는 물론 수직적으로도 덜 분화되거나, 세분화된 경우에는 재통합하여 덜 분화된 구조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구조의 복잡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조직행태의 이해」 김호섭 외 공저. p.303). ㉣ 환경의 불확실성과 조직구조의 복잡성은 역의 관계에 있다(「조직의 이해와 관리」 김병섭 외 공저. p.151),
정(正)의 관계로 보는 견해	㉠ 로렌스(P. Lawrence)와 로쉬(J. Losch), 대프트(R. Daft) : 조직의 환경이 불확실하면 할수록 그 조직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의 다양성이 요구되므로 더 높은 정도의 분화(수평적 분화)를 필요로 하며, 조직 내 부문 간 분화(departmental differentiation)가 증대되면, 다양한 부문 간 활동을 조정해 나가는 통합기제도 따라서 커진다. ─ 환경 확실(단순·정태적 환경) ⇨ 분화·통합 정도가 낮은 조직이 효과적(단순한 관료제적 통합기구 보유) ─ 환경 불확실(복잡·동태적 환경) ⇨ 분화·통합 정도가 높은 조직이 효과적(복잡한 내부통합기능 보유) * 분화의 기준은 기능이 아닌 일의 흐름의 동질성. ㉡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분화의 정도가 높아지며 통합이나 다수의 변경(邊境)조직이 필요하게 된다.(이창원)

④의 경우 견해대립이 있고 ③이 확실히 틀리므로 ③을 답으로 본다.

답 ③

10 임시체제(adhocracy)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매트릭스 조직                      ② 네트워크 조직                      ③ 굴릭조직                      ④ 태스크포스

해설

①②④는 탈관료제구조인 adhocracy에 해당된다.  
 ③ 조직유형으로 굴릭조직이란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굴릭(L. Gulick)은 원리접근법을 주장한 학자로 조직구조 형성 원리로 제시된 계층제 원리, 분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등은 관료제적 구조와 더 관련성을 갖는다.

답 ③

11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② 적정한 보수 지급과 연금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의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한다.
- ③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상위직책까지 승진하며 일생을 근무할 수 있는 생애직을 보장한다.
- ④ 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고용, 개방형 임용을 활용한다.

해설

④ (×)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과 폐쇄형 임용을 강조하므로 상시고용이나 개방형 임용과는 거리가 멀다.

답 ④

12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중 독립합의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요한 이익집단의 대표자를 합의체에 참여시켜 인사행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있게 수용할 수 있다.
- ② 인사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③ 엽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므로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해설**

② (×) 독립합의형은 합의제형 조직인 위원회 조직이 지닌 장·단점도 갖는다.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므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과 책임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답 ②

**독립·합의제형 중앙인사기관과 비독립·단독제형 중앙인사기관**

구분	독립·합의제형	비독립·단독제형
의의	중앙인사기관이 일반행정부처에서 분리되어 있고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체로 구성	중앙인사기관이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된 한 명의 기관장에 의해 관리됨.
장점	① 업관주의적 영향력 배제, 정치적 중립 확보, 실적제 발전에 유리. ② 합의제에 의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1인에 의한 전횡·독단 방지), 중요 이익집단 대표자를 참여시켜 인사행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 가능. ③ 합의체 구성원 임기를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 ④ 단독책임자가 아닌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다른 기관과의 밀착이나 소원한 관계를 방지하고 입법부나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 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음.	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인사행정의 수행하므로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명확화. ② 단일 지도층으로 형성되므로 중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결정 가능. ③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관리도구로 삼아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추진이 가능하므로 능률적 행정 수행.
단점	①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불분명과 책임 전가. ② 합의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사정책 결정의 지연. ③ 목적이 업관주의 방지이므로 인사행정의 적극화나 전문화 곤란. ④ 구성원이 양당적 또는 초당적 비전문가이므로 전문적 인사문제를 다룰 때 비능률성·비합리성 우려. ⑤ 행정수반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자신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곤란.	① 단독제 기관장의 독선적·자의적 결정에 대한 통제 곤란. ② 인사행정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결여로 인해 인사행정의 업관화·정실화 우려. ③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행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인사행정의 일관성·계속성 결여. ④ 행정수반이나 내각에 소속되므로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기 곤란.
미국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 :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인사관리처(OPM ;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영국	인사위원회(CSC ; Civil Service Commission)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일본	인사원(人事院)	내각관방의 내각인사국(2014년 총무성 인사은급국 폐지 후 설치)
프랑스	.	인사행정처(총리 직속)
한국	.	인사혁신처(국무총리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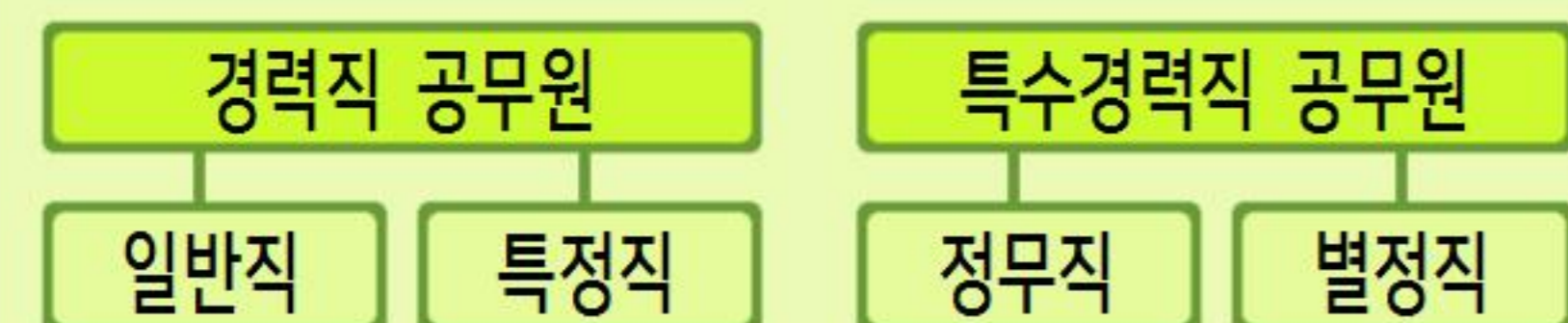
**13 국가공무원에는 있지만 지방공무원에는 없는 공무원은?**

- ① 정무직 공무원      ② 별정직 공무원      ③ 특정직 공무원      ④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해설**

④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구분



답 ④

**14 군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무원은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②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해설**

군무원 시험의 특수성을 반영한 출제임.

①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군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 군인사법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군인사법 제24조(보수) ①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무원은 봉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④ (○)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답 ③

15 다음은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중 일부이다. ㉠, ㉡에 적합한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 ① 1, 4                                      ② 2, 2                                      ③ 3, 5                                      ④ 1, 4

**해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 후 제한 제도 비교

퇴직 후 제한	대상	제한 내용	위반시
취업제한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불가	형사처벌
업무취급 제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의 업무(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를 퇴직 후 취업 불가	형사처벌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퇴직 전 2년 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의 업무(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 불가	과태료 (5천만원 이하)
행위제한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청탁 또는 알선 금지	형사처벌

답 ②

16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국회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헌법상 예산안 국회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지만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답 ②

### 17 예산의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추가경정예산      ② 특별회계      ③ 수입대체경비      ④ 기금

**해설**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양적 한정성 원칙 또는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답 ①

✂ 전통적 예산원칙과 예외, 현대적 예산원칙

유형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	국민에게 공개	신입예산, 국가정보원 예산(정보비)이나 국방부 일부 예산 등은 안보상 이유로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책임</li> <li>• 행정부재량</li> <li>• 행정부계획</li> <li>• 예산기구 상호교류</li> <li>• 보고</li> <li>• 다원적 절차</li> <li>• 적절 수단 구비</li> <li>• 시기신속성</li> </ul>
명확성·명료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편성	총액(총괄)예산(총액계상예산), 예비비	
명세성	구체적 항목에 따라 세분화	총액(총괄)예산	
엄밀성·정확성	예산(예정) = 결산(확정) *세입 = 세출(수지균형)도 포함하는 견해 있음	예산불용액, 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장치로 인한 예산·결산 간 불일치 *엄밀성을 세입 = 세출로 볼 경우 흑자예산, 적자예산	
한정성	양적 한정성(초과지출 금지)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질적 한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이용, 전용, 예비비	
	시기적 한정성(회계연도독립원칙)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지난 연도 수입·지출, 긴급배정	
단일성	재정활동을 단일예산으로 편성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예산	
통일성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의 연결 금지, 국고로 통합, 국고에서 지출	기금,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수입금마련지출,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사전의결 원칙	의회가 사전 심의 및 의결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공공기관의 예산, 긴급재정·경제 명령·처분, 선결처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완전성·포괄성 예산총계주의	모든 세입·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포괄성의 원칙)	순계예산, 공공기관의 예산, 기금, 정부의 현물출자, 전대차관,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제도	

### 18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계 간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정팽창을 막을 수 있다.
- ② 재원은 일반적 조세가 아닌 별도의 특정 수입 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확보한다.
- ③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되,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④ 우편사업·우체국예금·조달·양곡관리·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로서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해설**

- ① (×) 회계가 복잡해져 유사기능을 다른 회계와 중복 수행할 수 있고, 통제가 곤란해 예산팽창(예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 ② (○) 일반회계의 재원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하지만 특별회계의 재원은 별도의 특정 수입 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확보한다.
- ③ (○)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답 ①

**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은?**

- ① 계속비, 예비비
- ② 이용, 전용
- ③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 ④ 총괄예산제도, 추가경정예산

**해설**

③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 수단이다.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수단과 재정통제 수단**

<b>신축성 확보 수단</b>	이용, 전용, 이체,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비비 지출,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마련 지출, 총액계상사업, 총괄(총액)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긴급재정경제 명령·처분, 긴급배정 등
<b>재정통제 수단</b>	배정,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통제, 계약에 대한 통제, 정원과 보수의 통제, 장부의 기록·보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예산사업의 사전검토·협의·조사(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명세예산, 예산안편성지침, 보조금의 관리, 재정집행의 관리(매월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대한 감독

답 ③

**20 전자거버넌스의 최종적 의사결정 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확산된 분권적 의사결정
- ② 다수의 통합적 의사결정
- ③ 소수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 ④ 소수의 합의적 의사결정

**해설**

② 전자거버넌스의 최종적 의사결정 양식은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표출하고 시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어나가는 다수의 통합적 의사결정이다.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의 특성(김혁, 2005)**

구분	전통적 통치	거버넌스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
의사결정	소수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확산된 분권적 의사결정	다수의 통합적 의사결정
방향성	대의적 간접민주주의	다원적 협의민주주의	다수의 직접민주주의
가치	효율성(efficiency) 대응성(responsiveness)	효율성(efficiency), 민주성(democracy) 대응성(responsiveness)	민주성, 효율성 민주적 관리(democratic management)
주체	정부 중심	네트워크 중심	시민 중심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의 발전 단계와 특성**

1단계 e-information	시민들에게 참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단계(정부의 각종 정책·시책·법안·사업,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공약 등에 관한 자료)
2단계 e-interaction	네트워크상에 만들어진 게시판과 e-community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e-polling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
3단계 e-integration (e-voting)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표출하고 시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어 나가는 단계로서 정책에 대한 결정은 물론 선출직을 뽑는 선거 등 모든 결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단계(e-voting)

답 ②

**21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성은 수단적 행정가치에 해당된다.
- ② 롬젝(B. Romzek)과 듀브닉(M. Dubnick)에 따르면 강조되는 행정의 책임성 유형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 ③ 파이너(H. Finer)는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내재적 책임성을 강조했고, 프리드리히(C. Friedrich)는 입법부, 사법부, 국민 등 외부적 힘에 의한 통제로 확보되는 외재적 책임을 강조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체계적 성과측정을 중시한다.



해설

① (○) ■ 본질적 행정가치와 비본질적 행정가치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	수단적·비본질적 가치(Instrumental or Extrinsic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li> <li>공익, 정의, 복지, 형평, 자유, 평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가치. 사회적 가치의 배분 절차나 실제적 행정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li> <li>민주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합리성, 가외성 등</li> </ul>

② (○) 롬젝(B. Romzek)과 듀브닉(M. Dubnick)은 통제의 소재(내부·외부)와 통제(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③ (×) 프리드리히(C. Friedrich)는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내재적 책임성을 강조했고, 파이너(H. Finer)는 입법부, 사법부, 국민 등 외부적 힘에 의한 통제로 확보되는 외재적 책임을 강조했다.

■ 파이너(H. Finer)와 프리드리히(C. Friedrich)의 행정책임 논쟁

구분	H. Finer의 외재적 책임론 「민주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책임」	C. Friedrich의 내재적 책임론 「공공정책과 행정책임의 성질」
시대	근대입법국가를 대변하는 고전적 입장 정치·행정2원론과 관련	행정의 재량권을 중시하는 현대행정국가를 반영 정치·행정1원론과 관련
접근 차원	조직 차원 접근(조직 차원의 외부통제와 외재적 책임) 행정책임은 어떠한 조직·개인이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자율적·비제도적 통제의 한계를 지적. 책임 있는 행동을 보장하려면 공무원 개개인에게 외부통제를 가해야 함	공무원 개인 차원 접근(개인차원의 자율적 책임) 책임 있는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인 개인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의 촉진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행정책임에 관한 내부적 접근방법을 강조
내용	사법부·입법부 등 제도화된 외부적인 힘(제재)에 의한 외부통제와 외재적 책임 중시(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책임, 상급자와 부하 등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정책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의회에 대한 책임 등) * Hynemann도 외재적·민주적·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등을 통한 외부적·타율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봄.	내부통제와 내재적 책임 중시(관료개인의 주관적·자율적 책임이 중요) ① 기능적 책임: 공무원의 직업윤리나 전문기술적·과학적 기준에 따른 책임. ② 정치적 책임: 국민의 요구, 즉 민중감정(public sentiment; 국민 정서)에 응답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책임.
특징	3권 분립적, 법적, 정치적 제도적, 객관적, 외재적, 공식적, 소극적, 타율적, 가치중립적, 전통적, 간접적(의회에 대한 책임)	전문직업적, 재량적, 기능적, 비제도적, 주관적, 내재적, 비공식적, 적극적, 자율적, 가치지향적, 현대적, 직접적(민중에 대한 책임)

④ (○) 시장적 책임성(market accountability)은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능률성의 개념으로 비용·효과성을 중시하며, 투입보다는 결과와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고객의 만족을 위한 행정책임을 중시하며, 규칙이나 계층제적 권위에 의한 통제보다는 행정성과에 대한 측정을 시장적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중시한다. 따라서 객관적·체계적 성과측정을 강조한다.

답 ③

22 현행 법령 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출제 오류, 정답 없음)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 주민투표 청구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제기
㉤ 주민소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 가능

㉡ (○)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 가능

㉢ (○) 국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인정되며,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주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인 경우 인정된다(주민감사 청구권자는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와 동일함).

㉣ (○)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권자는 주민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도 지방재정운영사항에 대한 주민감사를 거친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바뀌었으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법률×)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출제 오류] 모두 다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허용된다. 출제 오류로 보인다. 일부 기출문제 복원 해설의 경우 @@은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며 ④가 답이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틀린 해설임을 주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를 보면 주민감사청구 청구권자에는 외국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를 오해하여 주민감사청구는 외국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주민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5조를 보면 긴 법률 규정을 반복 사용할 경우 일정 용어로 줄여 쓰기 위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즉,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란 표현은 제15조의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자의 범위와 동일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청구권을 가지며, 지방재정운영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를 거친 경우 주민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답 없음

✦ 주민참여제도 관련 참여권자

연령조건	주민참여 제도	관련 권리자(주민)		
		국민	재외국민	외국인
19세 이상	주민투표청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청구 가능.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
	주민소환투표청구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18세 이상	지방선거 선거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으로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9세 이상	주민소송제기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주민감사청구권자는 주민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		
25세 이상	지방선거 피선거권	60일 이상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된 주민	60일 이상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불가

※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자 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으나 관련법이 일괄 개정되지 못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소환투표청구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무위탁                      ② 행정협의회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민영화

해설

④ (×) 민영화는 정부 기능·활동·조직의 일부나 전부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인 행정수행방식인 광역행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 광역행정 방식

지방 자치법	협력사업(147조)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 사무처리의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력
	사무위탁(151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처리
	행정협의회(152~158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
	지방자치단체조합(159~164)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나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법인체인 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와 연합체(165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체 설립, 협의체의 연합체 설립.
지방 공기업법	공기업조합(44~45조)	지방직영기업 경영 사무의 광역적 처리에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가능
	공동기업(50조)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공사의 공동설립
기타	흡수합병(권한·지위흡수), 구역확장(편입·흡수통합), 시·군 통합, 연락회의, 직원파견,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답 ④



24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 ㉠ 재산세    ㉡ 부가가치세    ㉢ 담배소비세    ㉣ 주세    ㉤ 개별소비세    ㉥ 종합부동산세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국세 중 간접세(개·주·부·인·증)를 찾는 문제이다. ㉠㉥은 지방세이다. ㉡㉢㉣㉤은 국세이며 이 중 ㉡㉢㉣이 간접세이다.  
 • 조세의 전가(轉嫁) 유무에 따른 조세의 유형 구분

직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실제 부담자)가 일치.
간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실제 부담자)가 불일치하여 조세의 전가가 발생. 예)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레저세 국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답 ①

25 현행 법령 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들에게 분권교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시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없다.  
 ③ 인천광역시에는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될 수 없다.  
 ④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① (×) 분권교부세는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였으며 2015년 1월부터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다.  
 ② (×) 광역시도 특별교부세는 교부기준에 해당될 경우 교부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시 심사하여 교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 부동산교부세는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시·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교부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는 교부되지 않는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 100분의 35    다. 지역교육 : 100분의 1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④ (×) 소방안전교부세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이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

종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개념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재정력 지수 1 이하)하는 자치단체에 교부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 못한 사정, 지방 재정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교부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에 따른 재원 감소의 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를 위해 교부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부
재원	일정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	일정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부과 개별소비세의 45%
특징	일반재원	특정재원	일반재원	특정재원
	경상재원	임시재원	경상재원	경상재원
교부 기준	•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 • 자치구는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대상이 아님(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것에 합산 산정하고, 이를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교부하면, 다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교부.)	• 재원의 50%는 재난안전수요, 40%는 지역현안수요, 10%는 시책수요에 교부 •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장이 교부 신청시 심사해 교부, 필요할 경우 신청이 없어도 일정 기준을 정해 교부 가능 - 사용 조건·용도 제한 가능.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는 교부 불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로 교부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 특별시·광역시·도에는 교부하지 않음(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의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이 목적이었기 때문)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답 ③